



‘16년 2월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

부서 :

성명 :

1. 징집, 소집,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도 직무관련자이다.()
 ① ○ ② ×
2. "선물"이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.()
 ① ○ ② ×
3.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()
 ① ○ ② ×
4.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은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.()
 ① ○ ② ×
5.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에 대해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할 수 없다.()
 ① ○ ② ×
6.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.()
 ① ○ ② ×
7. 8촌(4촌)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회피할 수 있다.()
 ① ○ ② ×
8.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혈연·학연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되지만, 종교를 이유로는 특혜를 줄 수 있다.(없다)
 ① ○ ② ×
9. 공무원은 여비,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.(없다)
 ① ○ ② ×
10.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에 대해서는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할 수 있다.(없다)
 ① ○ ② ×



“살기 좋은 국토, 편리한 교통”



‘16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

부서 :

성명 :

1. 공무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반복될 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.()
① ○ ② ×
2.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무원은 회피할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3.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()
① ○ ② ×
4. 공무원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는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·청탁 등을 할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5.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·승진·전보 등에 대해서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.()
① ○ ② ×
6.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7. 공무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은 수령할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8. 공무원은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9.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위로, 격려,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① ○ ② ×
10. 공무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


‘16년 6월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

부서 :

성명 :

1.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외부강의 · 회의 시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안해도 된다.()
① ○ ② ×
2. 공무원이 외부강의 시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.()
① ○ ② ×
3. 공무원은 몇 촌 이내의 친족에게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줄 수 있는가?()
① 4촌 ② 5촌 ③ 6촌 ④ 8촌
4.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무원이 금전을 직무관련자에게 빌리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()
① ○ ② ×
5.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경우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.()
① ○ ② ×
6. 누구든지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, 어디에 신고 할 수 있는가? ()
① 행정자치부 ② 국가정보원 ③ 세무서 ④ 국민권익위원회
7.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명기해야 한다.()
① ○ ② ×
8.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반환할 경우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9.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접수한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할 수 있다.
① ○ ② ×
10. 공무원이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은 허용된다.()
① ○ ② ×

‘16년 8월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

부서 : 성명 :

1. 경조사 답례, 승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더치페이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전신고 후 식사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.()
① ○ ② ×
2. 직무 관련자와는 스크린골프, 골프연습장을 포함한 모든 골프가 금지된다.()
① ○ ② ×
3. 공무원은 유흥 종사자가 없는 노래방, 호프집 등 간단한 술자리는 할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4. 공용물의 ‘사적인 용도의 사용 · 수익’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의 제 공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()
① ○ ② ×
5. 공용 비품인 TV, 세탁기 등을 기관장의 집에서 사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.()
① ○ ② ×
6.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 또는 음식물은 받을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7. 새로 부임한 국장이 직무관련자(공무원 포함)들로부터 영전 축하 명복으로 화분을 수수하면 안된다.()
① ○ ② ×
8. 공무원은 자신이 속한 종교단체 · 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경조사를 통지 할 수 있다.()
① ○ ② ×
9. 예산사용에 의한 부가서비스란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, 기관전화 사용에 의한 콜 보너스, 물품구입 사은품 등을 의미한다.()
① ○ ② ×
10.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며, (5)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.